

「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기획재정부가 「총사업비 관리지침(기획재정부 훈령)」 위반에 대한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감액을 확대하는 등 재정적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,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재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총사업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수자원부문 세부 조정기준 삭제(안 제12조)

- ‘수자원의 보전·이용·개발 및 하천에 과한 사무’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지침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정기준 삭제

- 나.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재정적 제재근거 마련(안 제15조)
- 특정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기획재정부가 중앙관서의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재정담당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

- 팩스 : 044-201-551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(전화 044-201-328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